

# 道 내년 예산 첫 5조원 돌파

도의회 정례회 폐회... 예산안 의결  
도교육청은 2조3,805억원 확정

도의회가 내년도 도 및 도교육청의 당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올 한 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2면  
도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총 44건의 조례안 및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도 당초예산안은 5조11억3,9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22억5,900만원 늘었다. 도의 당초예산

안이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2조3,805억원으로 올해보다 1,670억원(7.5%) 증가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 달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안과 평화올림픽 촉구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선영기자 haru@



**도건설협 임원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6일 오후 강원도회 회의실에서 '2015년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 아하! 그렇구나

### 공동수급체의 특징과 법적 성질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논란이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학설로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견해, 지분적 조합으로 보는 견해,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개별적인 도급계약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를 여러 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한 경우에는 도급 목적을 분할하여 수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다.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에서는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

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 집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 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2012. 5. 17. 선고 2009다5014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밝힌 바 있다. 6개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상호 출자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분담이행방식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도급계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합방식(공동+분담)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에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에는 도급의 법률관계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